



건의사항

용적률 규제 완화

협회는 지난 8월 10일 국토계획법 및 시·군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에 건의하였음.

○ 현황

-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용적률 상한기준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조례로 실제 적용하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6개로 세분되나,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7층 또는 12층 이하로 구분해 실질적으로 7개로 세분·운영중(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

○ 건의내용

- 국토계획법에서 명시된 용적률 기준을 시·군도시계획조례 위임 규정 삭제 및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 삭제(불가시 최소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만이라도 삭제)

임대주택법령 개정 의견제출

협회는 지난 8월 17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에 제출하였음.

○ 건의내용

- 임대조건의 신고(변경)절차 간소화
 - 임대조건신고필증은 임대조건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교부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인하(1.5/10,000 ⇒ 0.5/10,000)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
-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비용 부담 제도 개선
 - 감정평가비용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비용 부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원화

협회는 지난 8월 19일 최근 대법원이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중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일괄 적용토록 판결함으로써, 향후 하자보수관련 쟁송·주택공급 급감·분양가 인상 등 주택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우려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에 관련규정을 적용토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법무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였음.

○ 현황

-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소관 부처 및 법률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 주택법은 시설공사별로 1년~3년, 내력구조부별로 5년~10년 범위에서 하자를 보수토록 규정(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6)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민법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0년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 주택관리방법의 기준에 관한 건축법의 특별규정이 동법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법 적용을 배제시킴(동법 부칙 제6조)

○ 건의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상의 주택관리방법 기준에 관한 건축법(현행 주택법) 적용배제 규정은 삭제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개정안중 개선 의견제출

협회는 지난 8월 16일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제출 하였음.

○ 건의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사유 명확화
 - 지정후 3개월 이상 하락, 가격하락을 전국평균 2배 이상, 3개월간 주택가격 3%이상 하락
 - 지정후 2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경우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예외사유 신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최근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시
 - 청약접수결과 각 평형별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로 요건 강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회는 지난 8월 25일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조경태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하였음.

○ 건의내용

-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 도입 유보
 - 충분한 연구 검토와 기술 및 자재가 개발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리대상 확대 현행유지
 - 경미한 공종은 현행과 같이 감리대상에서 제외

정부위탁업무

1. 월별 주택분양계획 · 분양실적

구 분	9월 분양계획	7월 분양실적	
		당 월	누 계(1~7)
2004년	28,716	10,196	98,336
2003년	21,817	14,748	81,146
증 감	6,899 (31.6%)	△4,552 (△30.9%)	17,190 (21.2%)

※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기준

2.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변 경 전	변 경 후	처리일자
계	203	468
신용평가	57	122
입찰참여	79	158
분양보증	45	237
기 타	22	51